제10호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 6
3. KIPEC 라운드테이블 ····· 8
4. 원 빅 뷰티풀 법안 (CRS 리포트 요지) ····· 10
5. 2025년 트럼프 관세 조치 현황과 주요일정 (CRS 리포트 요지) ····· 13

의회 일정 및 소식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5월 의회 주요 소식

하원, '원 빅 뷰티풀 법안' 통과……세금 감면 영구화와 복지 축소 포함

2025년 5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17년에 제정된 세제개편법(TCJA)의 주요 세금 감면 조항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 예산 삭감, 국방 및 이민 정책 강화, 환경 규제 완화 등 보수 진영의 정책 기조를 포괄하는 총 1,000페이지가 넘는 대규모 법안이다.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소득세 감면의 영구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시법으로 시행된 세율 인하를 영구화하고, 자녀 세액공제 확대, 팁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그리고 SALT(주 및 지방세 공제) 상한선 상향 조정 등의 감세 조치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고소득층과 고세율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안은 복지 부문에서는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 개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오바마 케어(ACA) 일부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 약 1,0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왔고, 다른 분석에 따르면 추가로 300만 명 이상이 무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 빅 뷰티풀 법안'의 핵심 쟁점, SALT 공제 상한 4만 달러로 인상

미국 하원은 지난 5월 22일, 지방세 및 주세 공제(State and Local Tax, SALT) 상한선을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감세 패키지, 일명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의 일환이다.

SALT 공제는 납세자가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연방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은 SALT 공제를 연 1만 달러로 제한했으며, 이로 인해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주의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하원 통과 법안에 따르면, SALT 공제 상한은 2025년부터 4만 달러로 상향되며, 연 소득 50만 달러 초과자부터는 공제 한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상한선과 소득 기준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1%씩 인상된다. 다만, 연 소득 62만6,350달러 이상(부부 기준 75만1,600달러)의 고소득자는 37%의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일부 항목별 공제는 축소되어 SALT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실질적으로 상위 20%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의 가렛 왓슨 분석가는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부터 실제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나며, 미국 납세자의 90% 이상이 여전히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LT 공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이른바 'SALT 코커스(SALT Caucus)'로 불리는 중도 성향 의원들은 "이 공제가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중산층에게는 필수적인 세금 감면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1만 달러 상한 폐지는 전국의 중산층 가정에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상한선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치가 "결국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SALT 공제 상향이 필요하다면, 다른 공제를 삭감하거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의 심사 절차로 넘어간 상태다. 향후 상원에서 어떤 수정안이 제시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패키지인 '원 빅 뷰티풀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지지…"미국 일자리 7만개, 140억 달러 경제 효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Nippon Steel)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약 150억 달러 규모)를 공식 지지하면서, 미·일 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3일 발표에서 해당 거래가 "미국에 7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14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인수를 차단했던 입장과는 대조적이며, 대선 기간 중 "상징적인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팔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트럼프의 기존 태도에서 사실상 선회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파트너십은 미국 경제에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 조건으로 US스틸 본사의 피

츠버그 유지, 미국 국적 CEO 임명, 미국인 중심 이사회 구성 등을 명시했다. 트럼프는 또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한 국가안보 재심사를 지시하면서도, 해당 거래가 미국의 이익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조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존 27억 달러였던 투자 계획을 110억 달러로 확대했다. 이 투자에는 미국 내 첨단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 건설과 피츠버그 지역의 기존 생산시설 개보수, 그리고 카네기 멜론대에 새로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다.

이번 인수는 미·일 간 진행 중인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도 맞물려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대미 투자에 더욱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세계 4위 철강기업인 일본제철과 세계 24위 US스틸의 결합으로 세계 3위 철강 생산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철강 시장에 대한 미·일 연합의 전략적 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철강노조(USW)는 여전히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내 핵심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본제철이 과거 미국 무역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감시와 조건부 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수 최종 승인은 현재 CFIUS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미·일 경제 및 산업 협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 6월 의회 주요 소식

관세정책,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2.5조 달러 감소시킬 것…의회예산처 분석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6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약 2.5조 달러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로 인해 미국 경제 전반의 규모는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무역수지 개선과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차례 협상용 관세 발표와 일시 유예 조치가 있었지만,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 평균 관세율은 10-15%로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CBO는 이러한 관세가 재정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총 2.5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중심 법안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초래할 2조 4,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확대 효과와 사실상 상쇄되는 수준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재정효과는 주로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약 0.4%포인트의 추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은 명목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와 소비세 등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둘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 고정금리 조건으로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실질적인 연방 지출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CBO는 이자 비용 절감만으로 약 5,000억 달러의 적자 축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

정했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정책국장 마크 골드와인은 "관세 수입이 공화당 세금감면 법안의 재정 부담을 상쇄하는 구조는 상당히 우연적"이라며 정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한편, 이번 관세는 소득 하위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CBO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필수재와 내구재 지출에 집중되어 있어, 관세 인상이 생활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부문에서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트럼프 '원 빅 뷰티풀 법안',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2.4조 달러 증가…의회예산처 분석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최근 발표한 비용 추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약 2조 4,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대규모 감세조치 가운데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인 조항들의 연장과 함께 추가적인 세금 감면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CBO는 총 3조 6,000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법안에 포함된 지출 삭감 조치는 1조 2,000억 달러 수준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되었다.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SNAP) 개편이 포함된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감세와 병행해 최소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추진 중이다. 이번 추계에는 법안 내 상호작용 조항들이 야기할 추가 재정 부담 약 1,740억 달러도 반영됐다. 이는 기존 예측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으로, 전체 재정적자 증가폭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CBO 분석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감면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며 CBO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하원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공화·미주리)는 "CBO가 2017년 감세법안의 비용 예측에서 1.7조 달러나 오차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분석 신뢰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재정보수주의자(fiscal hawks)'들은 여전히 이번 법안의 재정적 부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지출 삭감 폭 확대 또는 감세 범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상원의원들은 세금 감면 조항을 축소해 전체 법안 비용을 줄이자는 수정 제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메디케이드 개혁안에 포함된 근로 요건 조항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조항은 공화당이 지출 절감을 달성하려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CBO는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34년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가 1,09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약 140만 명은 시민권, 국적 또는 이민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으로, 각 주의 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CBO는 법안이 오바마 케어(ACA) 기반의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2034년까지 평균 보험료가 약 12.2% 하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며, 7월 초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부채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팬데믹 이전 약 100%에서 2021년 이후 약 120% 수준으로 상승한 뒤 정체 상태다. 현재 총 연방 부채는 약 36조 달러로, 이번 세금 법안으로 인한 2.4조 달러 적자 증가는 전체 부채의 약 6.7%에 해당한다.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조작영상(딥페이크) 방지법 (TAKE IT DOWN Act) (S.146)	공포 (2025. 5. 19)	Ted Cruz (공-텍사스) (2025. 1. 16)	개인의 내밀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할 의무 부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H.R.1)	하원통과 (2025. 5. 22)	Jodey C. Arrington (공-텍사스) (2025. 5. 20)	2017년 도입된 세금 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연방 재정사업 지출을 조정하며, 부채 한도를 인상. 의회 예산결의안(H Con. Res. 14)에 따라 하원 11개 위원회가 예산위원회에 제출한 법안들을 통합한 예산조정법안
경제 스파이 방지법 (H.R.1486)	하원통과 (2025. 5. 6)	Richard McCormick (공-조지아) (2025. 2. 21)	중국 등 외국 적대 세력이 러시아에 군사 기술·부품을 제공하거나 미국 기업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행위를 조사·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제재 권한을 부여
팁 소득 비과세 법안 (S.129)	상원통과 (2025. 5. 26)	Ted Cruz (공-텍사스) (2025. 1. 16)	직원이 현금으로 받은 팁에 대해 최대 2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새로 도입하되, 2025년 기준 연 소득 16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음식점 및 미용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
한미일 3국 협력법안 (H.R.3429)	발의	Ami Bera (민-캘리포니아) (2025. 5.15)	미국과 한국 및 일본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3국 의회 사이 정기적인 대화체(Inter-Parliamentary Dialogue)를 설립. 미국 측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주 국경 안보 지원법안 (H.R.3464)	발의	Chip Roy (공-텍사스) (2025. 5. 15)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 두 개의 기금을 신설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단속, 마약 및 인신매매 수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역량 강화법안 (H.R.3397)	발의	Trent Kelly (공-미시시피) (2025. 5. 14)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해양경비대(USCG)의 역할을 강화하고, 해양 거버넌스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교육과 연수를 수행. 중국 견제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지역 내 해양 역량 격차해소를 목표로 함.
관세 가격 투명성 법안 (H.R.3306)	발의	Jamie Raskin (민-메릴랜드) (2025. 5. 8)	2025년 1월 20일 이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관세를 상품 가격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
상호관세 경제보호 및 투명성 법안 (H.R.3292)	발의	Young Kim (공-캘리포니아) (2025. 5. 8)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해당 사실 및 상세한 근거를 연방 관보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며, 무역대표부는 7일 안에 하원 세입위원회 및 상원 재무위원회에 보고
외국 대리인 투명성 법안 (H.R.3229)	발의	Ben Cline (공-버지니아) (2025. 5. 7)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FARA, 1938년 제정)을 개정하여, 과거에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등록 의무를 계속 지도록 하고, 활동 종료 후에도 법무장관이 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
한국-미국 디지털 무역 집행법안 (H.R.3193)	발의	Carol D. Miller (공-웨스트버지니아) (2025. 5. 5)	한국의 디지털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를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하며, WTO 제소, 한미 FTA 분쟁 절차 개시 등 대응 조치

KIPEC 라운드테이블 (매튜 크로닉, 아틀란틱카운슬 선임국장)

: 트럼프 2기 행정부 핵 정책 전망

한미의회교류센터는 2025.5.13. (화) 매튜 크로닉 (Matthew Kroenig) 조지타운대 교수 겸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부소장/선임국장을 초청해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전략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크로닉 교수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설립한 전략태세위원회(Strategic Posture Commission)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공화당 인사들의 외교정책을 조언한 바 있다.

미국 핵전략 관련 의회 전략태세위원회 보고서 개요:

크로닉 교수는 전략태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핵전략 및 전력 태세에 관한 보고서(2023. 10.)를 공동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급속한 핵 전력 증강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두 개의 핵 초강대국(중국, 러시아)에 동시에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핵 억지 전략의 유지: 미국은 도시 (countervalue strategy: 대가치 전략) 보다는 적국의 군사력, 핵 전력 및 지도부 등을 (Counterforces strategy: 대군사전략) 핵 억지 전략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두 개의 핵무기 초강대국 (Two nuclear peers) 억지력: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지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필요하며,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한 국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억지하는 전략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핵 전력 증강 권고: 냉전 이후 첫 본격적인 핵 전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 구체적으로는 전략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다탄두 미사일 탑재량 증대 등이 포함됨.
- 전술핵무기 배치 확대: 러시아와 중국의 전술핵 전력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
-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러시아와 중국의 소규모 핵공격(5~10 발 정도)을 억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

위원회는 여야 추천 전문가 동수로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일치로 위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민주당 추천 전문위원들 역시 중국의 핵무기 확장 속도에 충격을 받고, 기존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현황 및 트럼프 2기 핵전략 전망

전략태세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실제 정책적 반영이 되고 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SLCM-N (핵 탑재 함대지 순항미사일):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를 검토했던 해당 프로그램을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부활시켰음.
- 핵무기 운용지침(Employment Guidance):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태세위원회 보고서 권고사항을 반영해 임기 후반부에 발표된 운용지침에서 미 전략사령부에

러시아와 중국 양국을 모두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

- 트럼프 2 기 향후 정책 전망:
  - 전략핵무기: 2026 년 1 월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만료 후 핵탄두 수 증가 가능성.
  - 전술핵무기: SLCM-N 외에도 지상발사 순항미사일(GLCM) 등 추가 도입 가능성.
  - 미사일방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황금 돔(golden dome)" 구상을 바탕으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예상.
  - 동맹과의 협의: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발표 전 동맹국들과의 의견 수렴은 계속될 전망. 특히 한국과는 정례적인 확장억지 대화가 지속되고 있음.

한반도와 인·태지역 동맹의 역할

전략태세위원회는 핵전략 수립에 있어 동맹의 기여를 중시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전략적 억지에서의 역할:
  -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국지적 분쟁의 확산 방지에 기여.
  - 미국의 확장억지는 30 여 개 동맹국 전체를 포괄하며, 이로 인해 강력한 전략핵무기 전력이 요구됨.
- 전술핵무기 아시아 재배치 논의:
  - 냉전기와 달리 현재 아시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없음.
  - 필요시 한국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미사일 방어 협력:
  - 한·일·괌 등에 배치된 방어체계가 북한의 소규모 핵공격 억지에 기여.

마지막으로 크로닉 교수는 향후 미·중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국이 북핵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국 문제에서도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및 비확산 관련 질의응답

- 미국 원자력 산업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자립(Energy Dominance)을 이유로 원자력 산업에 우호적.
  - 규제 완화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촉진 가능성이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23 협정 논의:
  - 미국은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를 수용해야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
  - 이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며, UAE 원전 수주의 전례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 존재.

미국의회조사국(CRS) 리포트 요지

원 빅 뷰티풀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제5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관할

2025년 5월 22일(목), 하원은 2025 회계연도 예산결의안(H.Con.Res.14)에 따른 예산조정 법안인 'One Big Beautiful Act'(H.R. 1)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제5편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1)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의 예산을 축소하여 기관의 운영범위를 제한 2)녹색 복원력 개선 프로그램(Green and Resilient Retrofit Program, GRRP)에 남아 있는 자금을 회수 3)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의 기능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로 이관 4)금융연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의 예산을 줄여 관련 분석 및 연구 활동을 축소

예산조정 절차는 의회가 세입, 지출 또는 부채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법안을 신속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예산결의안(H.Con.Res.14)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관할 범위 내에서 법률을 변경하여 2025 회계연도부터 2034 회계연도까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분석에 따르면, 보고된 제5편의 조항들은 같은 기간동안 총 51억 달러의 적자 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조항 50001: 녹색 복원력 개선 프로그램 (GRRP)

조항 50001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10억 달러가 배정된 GRRP의 미집행 잔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RRP를 통해,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특정 다가구 임대주택 소유자들에게 에너지 및 물 절약,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개보수 공사 비용을 위해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해 왔다.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약 1억 3,8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항 50002: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PCAOB)

2002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은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여, 상장기업, 브로커, 딜러에 대한 감사업무의 독립적인 감독을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는 PCAOB의 규정, 감사 기준, 예산 승인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조항 50002는 해당 법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AOB의 예산 및 기능을 SEC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CAOB의 2025 회계연도 예산은 3억 9,970만 달러이며, 주로 감독 대상 민간 기관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조달

된다. 한편, SEC의 예산은 금융서비스 및 일반정부 운영예산법안(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을 통해 지원되며, 이는 SEC가 징수하는 수수료로 상쇄된다. 조항 50002는 PCAOB가 징수한 미집행 수수료 전액을 연방 재무부 일반기금(Treasury General Fund)으로 이관하고,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른 PCAOB의 예산 책정 권한을 폐지하도록 한다. 이 변경으로 인한 향후 예산 효과는 SEC가 향후 PCAOB 관련 기능에 대해 어떤 지출 수준으로 승인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산정 관행상, 향후 SEC의 지출 및 상쇄 수입은 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PCAOB 관련 지출을 SEC로 이관하면 향후 10년간 적자가 7억 7,1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PCAOB는 상장회사, 브로커, 딜러 등 민간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어 왔으며, 2025 회계연도 예산은 약 3억 9,97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반면, SEC는 정부 예산을 통해 운영되지만, 그 비용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로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세금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 조항 50002는 PCAOB가 보유한 미집행 수수료를 연방 재무부 일반기금(Treasury General Fund)으로 이관하고, 향후 PCAOB에 대해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PCAOB의 감독 기능과 관련 예산은 모두 SEC로 이관되며, 이후 해당 기능에 대한 지출은 SEC 예산을 통해 집행된다. 예산 산정 방식에 따르면 SEC의 수입과 지출은 상쇄되므로, PCAOB 관련 지출이 SEC로 이전되면 해당 지출은 재정적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는 약 7억 7,1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항 50003 및 50004: 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10년 도드-플랭크법(Dodd-Frank Act)에 따라 설립되었다. 일반적인 정부기관과 달리 의회의 직접적인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로부터 분기별로 자금을 이체 받아 운영되어 왔다. CFPB는 필요에 따라 예산을 연준에 요청하며, 연준은 이를 승인하여 직접 지급한다. 이번 법안의 조항 50003은 CFPB의 2025 회계연도 예산 상한을 현재 8억 2,300만 달러에서 2억 4,900만 달러로 약 70%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CFPB 2024 회계연도에 약 7억 5,500만 달러를 실제로 집행한 바 있다. 또한 본 조항은 CFPB가 자체기금(Bureau Fund)에 보유할 수 있는 미집행 잔액을 해당 회계연도 예산 상한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예산 상한이 2억 4,900만 달러로 조정될 경우, CFPB는 최대 약 1,200만 달러까지만 잔액이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방 재무부 일반기금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2025년 5월 기준 CFPB 기금의 미집행 잔액은 약 3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본 조항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약 39억 달러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항 50004는 CFPB의 민사벌금기금(Civil Penalty Fund) 운영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CFPB는 민사 제재를 통해 징수한 벌금을 해당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피해들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 교육과 금융 역량 강화 활동 등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조항은 민사벌금기금의 사용 대상을 해당 집행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한정하고, 미집행 잔액은 전액 연방 재무부 일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민사벌금기금의 미집행 잔액은 약 4억 2,8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해당 조항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약 900만 달러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항 50005: 금융연구기금

재무부 산하 금융연구국(OFR)은 도드-플랭크법에 따라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OFR은 일

반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규제 권한이나 법적 판단 권한은 보유하지 않는다. OFR의 예산은 OFR 국장이 재무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며, FSOC의 예산은 재무장관이 별도로 결정한다. 두 기관의 예산은 현재 대형 은행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조달되며, 이 수입은 금융연구기금(Financial Research Fund, FRF)에 적립된다. 사용하지 않은 기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예산 상한이 1,600만 달러로 설정되었으며, 이 상한을 초과하는 기금 잔액은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2025회계연도 기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와 금융연구국(OFR)의 예상 의무지출 총액 1억 3,600만 달러, OFR에 대한 부담금 1억 2,400만 달러, 그리고 2025년 4월 현재 금융안정기금(FRF)의 미지출 잔액 7,400만 달러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조항은 연간 평가액과 지출 규모를 크게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조항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약 2억 9,2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5월 22일 CRS가 발간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 Title V,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총3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미국의회조사국(CRS) 리포트 요지

2025년 트럼프 대통령 관세 조치 현황과 주요일정

2025년 1월 20일(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교역 상대국들은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5년 1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주요 관세 조치(표1, 표2, 표3, 표4)와, 이 조치들에 대응해 외국 정부가 시행한 보복 관세 조치(표5)를 표 형식으로 수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두가지 연방법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아래는 이들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국제 비상경제권한법(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불법 약물의 유입"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어 대통령은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를 재인용하여 전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일부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는 상무장관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2018년과 2019년에 내린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2025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구리, 목재류,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트럭, 항공기 등 품목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산하 각 기관에 미국 무역 및 경제 안보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검토가 계속됨에 따라,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등 추가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제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하는 외국 교역 상대국에게 대해 무역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동안, USTR은 총 6건의 신규 제301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중 4건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 관세 조치(2025년 1월 20일 이후)

표1. 미국 관세 조치 (IEEPA, 2025년 5월 21일 기준)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펜타닐 관련조치 (행정명령 14193호)	
대상국	캐나다
대상품목	전 품목
현재 관세율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무관세 혜택 미신청·미자격 품목: 25% • 에너지 및 포타시(칼륨 비료) 수입품 중 USMCA 무관세 혜택 미신청·미자격 품목: 10%
주요일정	• 2월 1일: 대통령이 행정명령 14193호 발표, 2월 4일부터 캐나다산 대부분 품목에 25%, 에너지 제품 10% 관세 부과 예정 • 2월 3일: 관세 인상 조치 3월 4일까지 연기 • 3월 6일: USMCA 무관세 혜택 예외 발표, 포타시(칼륨 비료) 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펜타닐 및 이민 관련 조치 (행정명령 14194호)	
대상국	멕시코
대상품목	전 품목
현재 관세율	• USMCA 무관세 혜택 미신청·미자격 품목: 25% • 포타시(칼륨 비료) 수입품 중 USMCA 무관세 혜택 미신청·미자격 품목: 10%
주요일정	• 2월 1일: 대통령이 행정명령 14194호 발표, 2월 4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정 • 2월 3일: 관세 인상 조치 3월 4일까지 연기 • 3월 6일: USMCA 무관세 혜택 예외 발표, 포타시 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
중국산 상품에 대한 펜타닐 관련조치 (행정명령 14195호)	
대상국	중국
대상품목	중국산 전 품목
현재 관세율	• 20%
주요일정	• 2월 1일: 대통령이 행정명령 14195호 발표, 2월 4일부터 중국산 전 품목에 10% 관세 부과 • 3월 3일: 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 • 5월 12일: 백악관이 중국과 다른 관세(4월에 부과된 행정명령 14257호 관련 관세)의 90일 임시 인하에 합의 발표, 다만 행정명령 14195호에 따른 20% 관세는 유지
베네수엘라산 석유 관련 지정 국가 조치 (행정명령 14245호)	
대상국	미국 국무장관이 지정한 일부 국가
대상품목	지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
현재 관세율	• 25%
주요일정	• 3월 24일: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45 발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국가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 부과 • 2025년 4월 2일부터 발효

무역적자 관련 글로벌 파트너 대상 관세 조치 (행정명령 14257호)	
대상국	전 세계 (캐나다, 멕시코 제외)
대상품목	대부분 품목
현재 관세율	• 10%
주요일정	• 2월 13일: 대통령이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관련 정책 지침을 발표 • 4월 2일: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7호 발표, 4월 5일부터 최소 10% 글로벌 관세 시행, 4월 9일부터 특정 국가 대상 고율 관세 시행 예정(이후 유예) • 4월 5일: 10% 글로벌 관세 발효 • 4월 8일: 중국산 품목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 (4월 9일부터 발효) • 4월 9일: 국가별 관세 일시 발효 및 이후 유예 발표 • 4월 9일: 중국산 품목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인상 (4월 10일부터 발효) • 4월 11일: 일부 반도체 및 가전제품 관세 제외 발표 • 5월 12일: 중국과 관세 90일 인하 합의 발표 • 5월 14일: 중국산 품목에 대한 125% 관세를 90일간 10%로 인하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디 미니미스(소액 면세)' 조치 (행정명령 14256호)	
대상 국가	중국 및 홍콩 포함
대상 제품	800달러 이하 무관세 저가 수입품
현재 관세율	• 모든 해당 관세가 적용됨 (관세율은 제품별로 다르며, 이는 미국 통일관세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명시됨) • 우편 발송물의 경우: 54% 혹은 우편물 1건당 150달러 부과
주요일정	• 2월 1일: 대통령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 무관세 혜택 폐지 발표 • 2월 5일: "관세 징수 시스템 완비 시까지" 저가 무관세 혜택 일시 재적용 • 4월 2일: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6호 발표, 5월 2일부터 저가 무관세 혜택 폐지 • 4월 8-9일: 중국 우편 수입품 대상 최소과세율 30%에서 90%, 120%로 단계적 인상 • 5월 12일: 중국과 일부 관세 90일 인하 합의 발표 • 5월 14일: 중국 우편 수입품 최소과세율 120%에서 54%로 인하 (90일간)

출처: CRS, 미국 대통령 공식 문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백악관 홈페이지

표2. 미국 관세 조치 (제232조, 2025년 5월 21일 기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 (공포문 10895호 및 10896호)	
대상국	모든 국가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의 파생 제품
현재 관세율	• 25% (2025년 3월 12일부터 발효 중)
주요일정	• 2월 10일: 대통령이 기존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를 수정하는 형태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확대 선포함. • 3월 5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관세 시행 규정을 발표함.

	• 4월 4일: BIS가 관세 대상 파생 제품 목록을 수정함. • 4월 29일: 대통령이 일부 관세 조치가 모두 누적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함.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캐나다·멕시코에 적용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자동차 관련 제232조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 5월 2일: BIS가 관세 적용 대상 제품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조치 (공포문 10908호)	
대상국	모든 국가
대상품목	승용차, 경트럭, 그리고 특정 자동차 부품
현재 관세율	• 25%
주요일정	• 3월 26일: 대통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선포함. • 차량에 대한 관세는 2025년 4월 3일부터, 부품에 대한 관세는 늦어도 2025년 5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임. • 4월 29일: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가치에 기반한 부품에 대해 부분적인 세액 공제 조치를 발표함. • 4월 29일: 대통령은 일부 관세 조치가 누적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나 캐나다·멕시코에 적용되는 IEEPA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출처: CRS,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미국 정부 공식 문서 및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대통령 조치를 바탕으로 작성.

표3. 잠재적 관세 조치: 무역확장법 제232조 (2025년 1월 20일 – 2025년 5월 21일)

구리(Copper) 수입 조사 (행정명령 14220호)	
대상국	모든 국가 (잠재적)
대상품목	구리 및 그 파생 제품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2월 25일: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20호에 서명하고, 상무부 장관에게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 지시함. • 3월 10일: 산업안보국(BIS)은 제232조 조사에 착수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함.
목재류 수입 조사 (행정명령 14223호)	
대상국	모든 국가 (잠재적)
대상품목	목재, 제재목 및 그 파생 제품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3월 1일: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23호를 발령하여 상무부 장관에게 제재목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함. • 3월 10일: 산업안보국(BIS)이 조사에 착수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함.

가공된 핵심 광물 수입 조사 (행정명령 14272호)	
대상국	모든 국가 (잠재적)
대상품목	가공된 핵심 광물, 우라늄 및 그 파생 제품 (예: 반도체 웨이퍼, 전기차 배터리 등 반가공 및 완제품 포함)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4월 15일: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72호를 시행하여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함. • 4월 22일: 산업안보국(BIS)이 조사에 착수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함.
의약품 수입 조사 (연방관보 90호, 15951면)	
대상국	모든 국가 (잠재적)
대상품목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4월 16일: 산업안보국(BIS)은 제232조 조사가 4월 1일부로 개시되었음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함.
반도체 수입 조사 (연방관보 90호, 15950면)	
대상국	모든 국가 (잠재적)
대상품목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4월 16일: 산업안보국(BIS)은 제232조 조사가 4월 1일부로 개시되었음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함.
트럭 수입 조사 (연방관보 90호, 17371면)	
대상국	모든 국가 (잠재적)
대상품목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중·대형 트럭 부품 및 그 파생 제품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4월 22일: 산업안보국(BIS)은 트럭 수입에 대한 제232조 조사를 시작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함.
항공기 및 엔진 수입 조사 (연방관보 90호, 20273면)	
대상국	모든 국가 (잠재적)
대상품목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부품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5월 1일: 산업안보국(BIS)은 제232조 조사를 시작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함.

출처: CRS(의회조사국), 미국 연방관보 및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미국 정부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

표4. 잠재적 관세 조치: 무역법 제301조 (2025년 1월 20일 – 2025년 5월 21일)

외국 디지털 서비스세(Foreign Digital Services Taxes)에 대한 검토 (대통령 각서에 따른 조치)	
대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및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타 국가
대상품목	미정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2월 21일: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특정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의 재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대응 조치로 관세부과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중국의 해운, 물류 및 조선 산업에 대한 검토 (행정명령 14269호)	
대상국	중국
대상품목	선박 하역 크레인 및 기타 화물 처리 장비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4월 9일: 대통령은 USTR에 중국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 • 4월 17일: USTR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문을 게재함.
국제 수산물 무역 관행에 대한 검토 (행정명령 14276호)	
대상국	주요 수산물 생산국
대상품목	미정
관세율	• 미정
주요일정	• 4월 17일: 대통령은 USTR에 주요 수산물 생산국의 관련 무역 관행,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수산물 공급망 내 강제노동 현황을 검토하고, 무역법 제301조등 무역 집행 권한을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

출처: 미 연방관보와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미국 정부 공식문서를 기반으로 CRS가 정리함.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외국의 보복 조치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미국 수출품 및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시행하거나 발표하였다. 표5에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복 대응 조치들을 정리하였다.

표5. 2025년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외국의 보복 조치

중국	
미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조치 (행정명령 14195호)에 대한 대응 조치:	
주요일정	• 2월 10일: 중국은 특정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함. • 3월 10일: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추가적인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두 번째 보복 관세 조치(10-15%)를 시행함.

	• 2월 2일 – 3월 10일: 중국은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발표함.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수출 통제 조치 - '신뢰할 수 없는 기업(Unreliable Entity)' 지정 - 일루미나(Illumina Inc.) 유전자 시퀀서(유전체 분석 장비)에 대한 수입 금지 - 반덤핑 조사 - 반독점(공정거래) 조사 등
미국의 무역 적자 관련 관세 조치(행정명령 14257호)에 대한 대응:	
주요일정	• 4월 3일 – 11일: 미국의 관세율 인상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율을 34% → 84% → 125%로 순차적으로 인상함. • 4월 4일 – 11일: 중국은 다음과 같은 비관세 조치를 추가로 발표함: -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 12개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 6개 미국 기업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Unreliable Entity)' 지정 • 4월 12일: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125% 보복 관세가 공식 발효됨. • 5월 14일: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함: - 보복 관세율 125%에서 10%로 90일간 한시적으로 인하 - 4월 2일 이후 시행된 비관세 조치 철회에 합의 (단, 펜타닐 관련 보복 관세는 유지됨.)

캐나다	
미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조치 (행정명령 14193호)에 대한 대응 조치:	
주요일정	• 3월 4일: 캐나다는 미국산 일부 수출품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부과함. - 대상품목: 오렌지 주스, 땅콩버터, 와인, 증류주, 맥주, 커피, 가전제품, 의류, 신발, 오토바이, 화장품, 특정 종이 제품 등.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조치 (무역확장법 제232조, 공포문 10895호 및 10896호)에 대한 대응:	
주요일정	• 3월 13일: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함.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 (무역확장법 제232조, 공포문 10908호)에 대한 대응 조치:	
주요일정	• 4월 9일: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함. • 4월 15일: 캐나다 재무장관은 국내에서 계속 운영 중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일부 관세 면제를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함.

유럽연합 (EU)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	
주요일정	• 3월 11일: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여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 계획을 발표함. • 4월 8일: EU 회원국들이 4월 15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대해 10-20%의 대응 조치를 부과하기로 투표함. • 4월 14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대응 조치가 90일간 일시 중단됨. • 5월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잠재적 보복 조치 대상인 미국산 물품 목록에 대해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출처: CRS, 각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됨.

*본 보고서는 2025년 5월 27일 CRS가 발간한 *Presidential 2025 Tariff Actions: Timeline and Status* (총15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발행일 2025년 6월 9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	